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실태분석

Analysis on the Current State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경신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김정란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Univ.
Associate Prof. : Kim, Kyeong Shin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Univ.
Doctoral course : Kim, Jung Nan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 IV. 결과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on the current state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intervention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batterer in foreign countries were reviewed. Second, batterer programs in South Korea were explored.

In order to expand these batterer programs in South Korea, culturally appropriate intervention, more innovative research on comparison analysis of diverse intervention approaches, program impact, type of curriculum, and intervention protocol, evaluation criteria, requirements pertaining to program facilitators, political assistance, and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and community service are strongly needed.

I. 연구의 필요성

가정폭력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인 형태로 용인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법률적 조처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일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 아내학대의 경우는 그 동안 부부갈등 표출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 선택적 무관심을 받아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사회 문제로 쟁점화 되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아내학대에 대한 개입은 주로 쉼터를 찾아오는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피해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정신병리를 치료하는데 치중하였는데, 그 이유는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으며, 또한 기존의 사회통념이 피해자인 아내를 비난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박미은, 1998).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해여성들은 일정한 서비스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으며, 피해여성의 자녀들을 도와줄 자원(친척, 친구 등) 역시 부족하였고, 연구자들(Higgins, 1978; Taylor, 1984)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는 폭력 중단 후 개인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부부로 재결합되기를 원하며, 피해자 중심상담은 남편의 폭력에 관한 적절한 질문을 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뿐 폭력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를 지지집단, 법정(court ordered) 치료프로그램, 쉼터 등으로 제한시킴으로서 학대하는 남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의가 점차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여성들을 보호했던 쉼터에서부터 가해자나 아동들을 위한 개입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피해여성 대변자와 지역남성집단의 격려에 힘입어 1977년 보스턴의 'EMERGE', 로드아일랜드의 'Brother to Brother in Province', 덴버의 'AMEND'라는 프로그램을 시작

으로 각 지역에서 여러 조직들이 가해 남성에 대한 개입프로그램들을 개발·실시하였다(Gelles, 1997). 1980년 이후에는 가해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와 종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1980년대 중반에 이르자 가해자 집단프로그램은 임상심리학자들과 사회사업가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습득 및 단기 치료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체포위주의 법령에 의해 형성된 법원명령(court-mandated) 상담은 가해자 프로그램을 더욱 확산, 다양화시켰다. 최근에는 가해자 프로그램의 조직적 기반이 피해여성 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가해자 프로그램부터 정신건강 센터나 가족서비스 내에 포함된 프로그램까지 매우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Gondolf, 1997a),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도시에서는 공익과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해자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Bennett, 1999).

반면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여성의전화'가 개소한 1983년 이후부터인데, 그 이후 여러 여성단체들이 국내의 가정폭력 실상을 알려내는 작업과 더불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통칭)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동안 사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김현수·조선미·윤웅장·이영미·송은하, 2000)와 가해자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광주여성의전화, 1999;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부산여성의전화, 1999;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1999) 및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잘 밝혀지지 않았던 가해자들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를 통해 접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을 통한 보호처분의 하나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기관들이 개입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이나 가해자의 특성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보다는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 여러 프로그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나 일부 변형되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서 가정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와 상담과정을 보면, 아직 대부분의 우리 나라 아내들은 폭력을 당하면서도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을 치료한 후 가정생활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미혜, 1997).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가해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절실히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에서 선행되어진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프로그램 접근방법

가정폭력을 규정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의 개입 방법과 지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대표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통찰모델, 상호작용 및 체계이론, 인지행동모델, 여권주의모델 등이 있다.

위의 네 가지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찰모델(insight model)

통찰모델에 의하면 초기 발달상의 결함으로부터

초래된 심인적 문제가 폭력행동의 원인이다. 가해자는 '서투른 충동통제, 낮은 좌절 내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벼려짐에 대한 두려움, 의존성, 우울, 손상된 자아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강박장애, 편집증, 경계선 장애, 공격적, 그리고 정신병리'라고 진단되어진다(Adams, 1988).

통찰모델에 기반한 가해자 프로그램의 치료목적은 가해자에게 아동기로부터의 과거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가해자가 과거 상처를 극복한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통찰모델의 지지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 개인치료를 선호하며, 치료는 폭력행동을 명확하게 다루기 보다 아동기 경험을 탐색하게 하고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Adams, 1988). 따라서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성장과정에서 습득된 낮은 자아존중감, 분노, 불안, 우울, 의존성 등 부정적 감정들에 대한 심리치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Tolman과 Bennett(1990)은 문헌고찰을 통해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지닌 특정 가해자 집단이 있기는 하지만, 아내학대는 이런 결함을 지닌 남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Bograd (1988) 역시 아내학대 중 일부는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사회적 변인들이 연결되어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더구나 가해자에게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치료관계는 폭력행동에 대한 직면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폭력행위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해결하려는 접근은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구실을 줄 수 있으며, 아내학대의 중심 논의 중의 하나인 권력과 통제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2) 상호작용 혹은 체계이론(interactional or system theory)

체계이론가들은 폭력을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간주한다. 또한 폭력행동을 다른 문제들의

증후일 수 있다고 본다(Gelles & Maynard, 1987).

상호작용 이론에 의하면 폭력은 남편과 아내사이의 순환적인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폐쇄된 행동패턴인 동시에, 관계 내에서 누가 통제를 하느냐에 대한 상호투쟁의 표현방식이며,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것이다. 즉 개별 파트너는 모든 상호작용에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용어 역시 폭력적 커플(violent couple), 부부 폭력(conjugal violence), 폭력 부부(battering pairs), 학대적 체계(abusive system)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이 이론에 근거한 치료의 목적은 폭력을 포함한 관계 내 문제에 대해 부부 각자가 기여하는 방식을 규명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체계이론 지지자들은 부부상담이나 부부집단상담을 일차적 개입방법으로 선택한다. 치료자의 역할은 가족상호작용 패턴을 변화시키고 가족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규칙을 검토하기 위해 폭력이상의 것을 탐색하는 것이며,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부부관계 및 부부 의사소통 유형분석, 부부간의 말하기, 듣기, 자기주장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Gelles & Maynard, 1987).

그러나 부부 모두의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접근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력 불균형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폭력적 커플이나 폭력 체계와 같은 체계적 용어는 성(gender) 고유의 속성과 폭력의 심각한 결과를 은폐 시킬 위험이 있다.

3) 인지행동모델(cognitive-behavioral model)

인지행동모델은 폭력을 학습된 행동이라고 보는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따라서 인지행동 모델에 근거하면 폭력행동은 몇 가지 방식으로 학습되어질 수 있는데, 우선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가해자는 폭력을 관찰하거나 경험함으로써 권력과 통제의 형태로 폭력을 학습할 수 있다. 혹은 가해자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결과나 법적 제재가 부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폭력은 강화되어 진다. 또한 이 모델은 사회적 기술부족, 스트레스관리, 분노조절의 결함으로서 폭력을 바라본다. 이 모델의 지지자들은 인지행동모델이 폭력적인 남성이 비폭

력적인 남성보다 갈등이나 불안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느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접근이라고 주장한다(Tolman & Bennett, 1990).

인지행동모델에서는 폭력은 학습된 행동이기 때문에 비폭력적 행동 역시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 및 치료는 가해자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대안적인 기술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며, 치료자는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사고패턴을 변화시킨다(Adams, 1988). 인지행동모델에 근거한 프로그램들은 타임아웃, 남성의 성역할 사회화, 인지 재구조화, 자기주장, 폭력 대안행동 학습, 분노조절, 긴장이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행동과 분노통제기술은 성차별주의와 권력 및 통제의 문제를 배제한 채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되어진다(Gondolf & Russell, 1986). 즉 가해자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학습없이 기술들을 배우게 되고, 배우자에게 자신이 치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신체적 학대는 중단시키더라도 심리적 학대를 지속하거나 강화하는데 이용되어 질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배우자가 분노를 유발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행동은 매우 선택적이다. 많은 가해자들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직장에서 보다는, 이득을 줄 수 있는 자신의 가정 안에서만 폭력적이다. 결국 성차별주의를 배제한다면, 여성이 폭력의 주된 표적이 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4) 여권주의모델(pro-feminist model)

여권주의모델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종속시키는 원인을 연구함으로써 남성의 권력과 통제를 설명한다. 이 모델의 지지자들은 개별적인 학대에 초점을 두기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시기와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권력 불균형의 문제로 폭력을 바라본다(Stordeur & Stille, 1989). 즉 아내학대는 ‘가해남성과 피해여성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통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성차별적 기대와 통제행동

을 변화시키고, 비통제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 모델에 근거한 치료자들은 가해자 집단상담 유형을 선호하고,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통제행동을 규명하고 제거시키는 교육과 인지행동기술을 포함하며, 성차별적인 기대와 태도를 다룬다. 그리고 폭력행동 종결과정의 출발점으로 가해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대부분의 여권주의에 근거한 프로그램들은 피해 여성의 안전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두며, 가해자에게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계획을 세우고, 금지 명령을 이행하며, 알콜과 약물남용을 중단하고, 배우자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하지 말도록 명령한다. 또한 아내학대를 사회 문제로 바라보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피해여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평가한다(Adams, 1988).

그러나 이 모델 또한 제한점은 있다. 예를 들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폭력적인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간의 개인적인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폭력을 강화시키는 법적·제도적인 변화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 대한 즉각적인 교육과 재활의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단일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여러 접근들을 결충하여 혼합해서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 여권주의 모델을 추구하면서 인지행동모델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Saunders(2000)는 인지행동모델, 혹은 통찰 모델과 여권주의모델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여, 각 접근별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연구가 추후에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미국 프로그램 현황

현재 미국에서는 114개 정도의 가해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표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1997년 9월 현재 콜럼비아를 포함한 37개 주에서 표준안이 제정된 상태이고, 11개 주는 제정 중이며, 나머지 3개 주는 아직 미개발된 상태이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2개 주와 1개의 준주에서 표준안이 제정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제정 중이거나 미개발된 상태이다. 각 주의 표준안들은 거의 그 규정과 내용이 유사하다(Austin & Dankwort, 1999).

Austin과 Dankwort(1999)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외국에서 선행되어지고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내용을 크게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철학 및 원칙

가해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운영전반에 적용되는 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프로그램의 일차적 목적은 가해자의 학대행동을 종결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인데, 학대행동에는 폭력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고립, 심리적 행동에서부터 신체적 행동까지 포함된다. 또한 대다수의 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동시에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프로그램에서 가부장제를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의 유지 및 원인이라고 바라보고, 학대를 성차별적인 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강화된 상대방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의 사용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가해자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여성들의 상황, 권리, 개인차 등이 존중되어야 하며, 학대행동에 대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면서 가해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가해자 자신이 학대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 권리 역시 존중되는데, 치료자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프로그램의 제약조건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는데, 가해자가 폭력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둔다

2) 프로그램 규정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부여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폭력근절을 위한 통합된 지역사회 활동의 일부분으로써 타 기관간의 협력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피해여성 대변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치료자들이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밀보장 권리포기증서에 서명을 해야하며, 프로그램 규정 내에 피해자와의 접촉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의한 절박한 위험을 경고해 줄 의무로써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시와 종결 날짜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와의 접촉은 더욱 심각한 폭력피해의 가능성을 유발하고,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서비스 시설에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지불 규정이 있지만,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내규를 포

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을 제공할 것을 의미화하고 있다.

〈표 1〉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의 표준안 중 일부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3) 진행자의 윤리와 자질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윤리규정은 진행자는 폭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하고, 알콜 혹은 약물남용의 경험이 없어야 하며, 자신의 성차별주의적 태도를 없애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진행자는 가정폭력 사례관리, 치료, 개입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방적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폭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이나 피해자 개입 프로그램에 대해 24시간~8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슈퍼비젼을 받아야 한다.

4) 인테이크

인테이크 과정은 일차적으로 위협의 심각성, 폭력의 역사, 정신건강과 약물남용에 대한 사정을 포함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상대 배우자에 대한 학대, 구

〈표 1〉 미국 가해자 프로그램 표준안 규정

	Georgia	Wisconsin	Rode Island	Nevada	Texas	Pennsylvania	Washington
목 적	폭력근절과 피해자의 안전						
대상의 자발성 여부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	자발적	강제적
지속성 여부	지속적						
규칙 유무	○	○	○	○	○	○	○
피해자상담 실시 여부	×	×	×	×	×	×	×
평가수행	○	○	○	○	○	○	○
요금	○	○	○	○	○	○	○

타 및 통제의 정도, 타인에 대한 폭력사용 여부, 과거 폭력피해 경험여부, 철저한 정후평가, 약물남용 여부, 배우자에 대한 소유욕과 의존성 정도, 분노표출 방식, 우울감과 기타 정신건강 문제의 경험, 범죄력, 문화적 이슈, 학습 무능력 사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출석 및 참가, 비밀보장에 대한 제한조건, 피해자 안전점검 규정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참가자들과 문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약물이나 알콜남용, 만성질환자 등 심각한 위험성을 띠고 있는 프로그램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

5) 프로그램 구조: 형태, 방식, 내용 및 기간

프로그램 유형은 폐쇄된 집단상담이 선호되며, 대부분 24주~26주 정도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Bograd, 1984; Dobash & Dobash, 1992; Kaufman, 1992)은 부부상담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제해야 하며, 특히 초기 접근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선호하는 접근법으로는 심리-교육적 모델, 인지-행동적 모델, 여권주의적 모델, 혹은 이 세 가지 모델이 혼합된 접근을 선호한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권력과 통제, 남성의 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폭력을 지지하는 태도 및 신념, 학대의 유형, 폭력의 영향, 자신의 폭력에 대한 책임성 부여 등을 포함한다.

〈표 2〉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해자 프로그램 구조 중 일부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6) 이수기준

기해자들은 반복적인 폭력사용, 낮은 출석률 등과 같은 계약위반으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되기도 한다. 프로그램 이수기준에 있어 일부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참가횟수와 프로그램 실시 동안 집단규칙 준수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인정을 포함하고 있다.

3. 프로그램 평가

기해자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연구들(Eisikovits & Edleson, 1989; Gondolf, 1991, 1997b; Rosenfeld, 1992; Tolman & Bennett, 1990)에서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폭력근절율은 60%~80%정도이며, 위협이나 언어적 학대의 감소율은 프로그램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방법상의 결함은 이러한 평가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전체 프로그램 이수자 중의 30%~45%에 해당하는 낮은 응답률, 6개월 이내의 단기 추후검사, 자기보고식 측정, 통제집단의 결여, 사건지향적 결과, 피해자 서비스와 같은 중재변인 간과, 중도탈락이나 프로그램을 참석하지 않은 기해자에 대한 설명결여 등으

〈표 2〉 미국 기해자 프로그램 구조

	Georgia	Wisconsin	Rode Island	Nevada	Texas	Pennsylvania	Washington
접근방법	인지+여권 주의모델	여권주의+ 인지모델	여권주의+ 인지모델	인지행동 모델	여권주의 모델	인지행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
유형	폐쇄집단	폐쇄집단	폐쇄집단	폐쇄집단	폐쇄집단	폐쇄집단	폐쇄집단
기간	-	-	1년	최소 6개월	최소 18주	12주	최소 26주
내용	폭력의 이해 폭력의 영향 안전계획수립 사회관계망 대안기술	폭력의 이해 폭력의 영향 성역할사회화 성역할사회화 권력과 통제 권력과 통제 약물알콜중독 약물알콜중독 대안기술	폭력의 이해 폭력의 영향 폭력의 학습 성역할사회화 성역할사회화 권력과 통제 권력과 통제 약물알콜중독 약물알콜중독 대안기술	폭력의 이해 폭력의 영향 폭력의 영향 태도신념변화 태도신념변화 권력과 통제 권력과 통제 안전계획수립 안전계획수립 대안기술	폭력의 이해 폭력의 영향 폭력의 영향 태도신념변화 태도신념변화 권력과 통제 권력과 통제 안전계획수립 안전계획수립 대안기술	폭력의 이해 폭력의 영향 폭력의 영향 가부장제 권력과 통제 태도신념변화 안전계획수립 대안기술	폭력의 이해 폭력의 영향 폭력의 영향 책임인정 권력과 통제 태도신념변화 안전계획수립 대안기술

로 인해 평가 방법에 있어서 대안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첫 번째 대안은 지역사회에 가해자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다(Wolf, 1983). 두 번째 대안은 가해자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윤리적 표준안과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다(Beauchamp & Childress, 1990).

III. 연구방법

1. 내용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2000년 6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된 적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문헌이나 가정폭력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실시여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가 발간된 기관은 보고서를 토대로, 미발간된 기관은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직접 전화인터뷰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전국의 10여 기관 중 7개 기관의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개 기관의 경우 현재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 중인데 그 중 보고서가 발간된 한 가지 프로그램만을 분석하였다.

2. 내용분석기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가정폭력의 새

로운 영역인 가해자 프로그램의 분석기준을 정하는 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프로그램을 발달시키기 위한 연구의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프로그램과 우리 나라의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외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던 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일반적 형태, 프로그램 규정, 진행자 구성, 프로그램 형태,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평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V. 결과분석

1. 프로그램의 일반적 형태

조사결과 분석 대상 프로그램 중 2000년 6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이 6개, 일시중지된 프로그램이 1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형태는 <표 3>과 같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대부분이 가정폭력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단체였으며, 지역적으로는 광주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대상자는 전원 가정폭력으로 고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성인남성이었으며, 운영형태 역시 법원이나 보호관찰소로부터 위탁을 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향은 프로그램 특성상 본인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참가하는 외국의 프로그램

<표 3> 프로그램의 일반적 형태

지 역	실시기관	대 상	운영형태	지속성 여부
서울	민간상담소	수강명령 받은 성인 남성	보호관찰소 위탁	상시 진행중
수원	여성단체/의료기관	수강명령 받은 성인 남성	보호관찰소 위탁	일시 중지됨
부산	여성단체	수강명령 받은 성인 남성	법원 위탁	상시 진행중
광주a	여성단체	수강명령 받은 성인 남성	보호관찰소 위탁	상시 진행중
광주b	여성단체	수강명령 받은 성인 남성	법원 위탁	상시 진행중
광주c	개인상담소	수강명령 받은 성인 남성	보호관찰소 위탁	상시 진행중
전주	여성단체	수강명령 받은 성인 남성	법원 위탁	상시 진행중

설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와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현재의 상태로만 운영하기보다는 아내학대 가해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2. 프로그램 규정

프로그램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4〉),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해자의 폭력근절이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었으며, 인지적 교정과 비폭력적인 사회기술 습득이 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규칙여부나 요금, 평가수행부분에서는 7개 기관 모두 동일하였으나, 피해 아내와의 접촉유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접촉목적에 있어서 2개 기관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으며, 1개 기관은 부부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피해 아내와의 접촉은 초기에 시행하기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부부 상담의 경우는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진행자 구성

프로그램 진행자 구성의 경우는 각 프로그램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표 5〉), 주진행자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 진행자와 관찰자 2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주진행자와 보조 진행자, 그리고 관찰자로 구성되는 경우, 여러 명의 주진행자가 공동으로 구성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졌다. 어떠한 유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심리교육적 특성을 띤 폐쇄집단인 경우에는 여러 명의 주진행자로 구성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주진행자 1인과 보조진행자 1인, 그리고 인턴쉽 과정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을 관찰할 관찰자 1인 정도로 진행자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표 4〉 프로그램 규정

	서울	수원	부산	광주a	광주b	광주c	전주
목적	폭력근절	인지적 교정과 비폭력적인 사회기술 습득	폭력근절	폭력근절	폭력근절	인지적 교정과 비폭력적인 대안기술 학습	폭력근절
규칙유무	○	○	○	○	○	○	○
피해자접촉	×	○	×	×	○	○	×
요금	×	×	×	×	×	×	×
평가수행	○	○	○	○	○	○	○

〈표 5〉 진행자 구성

	서울	수원	부산	광주a	광주b	광주c	전주
진행자 선별기준유무	○	○	×	○	×	×	○
진행형태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보조진행자 여성운동가	정신과의사 사회사업가	주진행자 관찰자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관찰자	정신과의사 가족학교수 상담원 목사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주진행자

그리고 진행자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진행자에 대한 선별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프로그램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진행자의 윤리와 자질을 검증하고 엄격하게 진행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규정 내에 진행자 선별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프로그램 형태

프로그램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프로그램 접근방법의 경우 여권주의모델과 인지모델을 통합하여 적용한 곳이 3곳, 인지행동모델을 적용한 곳이 3곳, 통찰모델과 인지행동모델을 통합하여 적용한 곳이 1곳으로 나타나, 외국과 마찬가지로 여권주의모델과 인지행동모델을 통합하거나 인지행동모델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형은 폐쇄집단이 6곳, 개인상담이 1곳으로 집계되었는데, 개인상담을 실시하는 곳은 가해자가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이수시간은 32시간-50시간, 횟수는 10회-20회, 기간은 5주-20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수기준은 프로그램 참가횟수로 결정되는데 보통 1회 이상 결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 프로그램 실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만으로 형태의 적

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형태로 정형화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와 접근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그 효과를 비교분석 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해보면(<표 7>),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분노관리 및 의사소통훈련이 모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폭력의 영향, 권력과 통제, 알콜 및 약물 관련 내용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접근방법에 따라 내용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인지행동모델과 여권주의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에는 안전계획수립이나 지지체계 점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찰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은 정신과 상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내용구성의 기준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접근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실시기관들은 목적과 접근방법에 적합한 내용들로 차별화된 내용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프로그램에 참가할 가해자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고, 그 내용들을 진행 중에 수시로 점검하며, 프로그램 종료 시 참가자들의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표 6> 프로그램 형태

	서울	수원	부산	광주a	광주b	광주c	전주
접근방법	인지+여권주의모델	인지행동모델	인지행동모델	인지+여권주의모델	통찰+인지행동모델	인지행동모델	인지+여권주의모델
유형	폐쇄집단	폐쇄집단	폐쇄집단	폐쇄집단	폐쇄집단	폐쇄집단	개인상담
시간	32시간	50시간	40시간	32시간	32시간	32시간	32시간
횟수	13회	13회	20회	11회	16회	10회	11회
기간	7주	7주	20주	5주	16주	10주	5주
이수기준	12회 이상 참가	12회 이상 참가	18회 이상 참가	10회 이상 참가	15회 이상 참가	9회 이상 참가	10회 이상 참가

<표 7> 프로그램 내용

	서울	수원	부산	광주a	광주b	광주c	전주
사전면접	○	○	○	○	○	○	○
오리엔테이션	○	○	○	○	○	○	○
가정폭력이해	○	○	○	○	○	○	○
가정폭력영향	○	○	×	○	○	○	○
권력과 통제	○	○	○	○	×	○	○
가부장제사회	○	○	×	×	×	×	×
알콜 및 약물	○	○	○	○	○	×	○
분노관리	○	○	○	○	○	○	○
갈등관리	○	○	×	○	×	○	○
스트레스관리	○	○	×	○	×	○	○
의사소통훈련	○	○	○	○	○	○	○
자존감 향상	×	×	×	×	○	○	×
부부관계	○	×	○	×	○	×	×
부모역할	×	×	○	×	×	×	×
책임감	○	○	○	×	○	×	×
성생활	×	×	○	×	×	×	×
안전계획수립	○	○	×	○	×	○	○
지지체계 접촉	○	×	○	○	×	×	○
피해자상처공감	○	×	×	×	×	×	×
자서전 쓰기	×	×	×	×	○	×	×
정신과 상담	×	×	×	×	○	×	×
성경 공부	×	×	×	×	○	×	×

6.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수행을 살펴보면(<표 8>),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종결시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구두평가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세부 항목의 경우 내용평가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1곳, 내용평가와 참가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3곳, 내용평가와 참가자 평가, 진행자 평가가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 1곳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의 효과는 내용과 참가자, 그리고 진행자가 조화를 이룰 때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세 부분 모두의 평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또한 현재까지는 추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이 참가자에게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후검사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추후검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는 대부분 구조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a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표 9>, <표 10>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살펴보면 진행자 영역, 참가자 영역, 프로그램 영역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세 영역 모두에서 4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분노관리

〈표 8〉 프로그램 평가

	서울	수원	부산	광주a	광주b	광주c	전주
시기	종결시	종결시	종결시	종결시	종결시	종결시	종결시
평가형식	자기보고식	자기보고식	자기보고식	자기보고식	자기보고식	자기보고식	자기보고식
내용평가	○	○	○	○	프로그램 진행 중	32시간	프로그램 진행 중
진행자 평가	×	×	×	○		10회	
참가자 평가	○	○	○	○		10주	
제안점	○	○	○	○		×	
추후검사 실시여부	×	×	×	×		×	

〈표 9〉 광주a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프로 그램	도움정도	4.78	0.44
	기 간	4.22	0.97
	내 용	4.78	0.67
	계	4.59	0.36
진 행 자	적극성	4.67	1.00
	준비성	4.89	0.33
	친절도	5.00	0.00
	명확성	5.00	0.00
	숙련도	4.78	0.44
	계	4.87	0.28
참 가 자	참여도	4.56	0.88
	학습도	4.67	0.71
	관심도	4.67	0.71
	계	4.63	0.75

I·II의 점수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지체계 점검, 폭력관련 영역 등의 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4.0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이 교육중심인가 상담중심인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광주a의 경우 프로그램 개별내용의 특성에 맞게 가정폭력이나 부부관계 영역은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비폭력적인 대안기술은 교육과 활동을 위주로 진행하여 참가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해석된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보면(〈표 11〉),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

〈표 10〉 광주a 프로그램 내용평가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초기면접/오리엔테이션	4.00	0.87
폭력에 대한 이해	4.44	0.53
폭력의 매개요인	4.44	0.53
분노관리 I	4.67	0.50
분노관리 II	4.67	0.50
갈등과 스트레스	4.44	0.73
부부관계	4.44	0.73
지지체계점검/프로그램 평가	4.56	0.73
계	4.45	0.64

났는데,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태도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가해자 프로그램의 일차적 목적이 폭력행동 근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프로그램 참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프로그램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가해 남성들의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된 점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에게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해 남성의 프로그램 참여가 피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 할 수 있는 평가체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광주a 기해자 프로그램 사전-사후검사 결과

항 목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대 응 차		T	Sig.
				평 균	표준편차		
폭력에 대한 태도†	사전	2.56	1.03	-1.02	0.72	-4.24	0.003**
	사후	1.53	0.60				
분노관리†	사전	2.84	1.09	-1.11	1.23	-2.72	0.026*
	사후	1.73	0.42				
자아존중감	사전	2.62	0.57	1.24	0.95	3.94	0.004**
	사후	3.87	0.50				
기능적 의사소통	사전	2.78	0.96	1.03	0.99	3.12	0.014*
	사후	3.81	0.74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전	2.56	0.61	-0.44	0.68	-1.97	0.084†
	사후	2.11	0.28				
우울†	사전	3.13	0.82	-0.44	0.49	-2.75	0.025*
	사후	2.69	0.66				
결혼생활만족도	사전	2.78	0.96	1.00	1.09	2.74	0.025*
	사후	3.78	0.50				

† p<.10 *p<.05 **p<.01

† 표시된 항목은 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가해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배경이론 및 구성내용 등을 살펴본 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해자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내린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가해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광주여성의전화의 프로그램보고서(199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가해 남성들은 외국인에게는 익숙한 통제, 분노, 스트레스 등을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개인의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과제물을 처리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은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가능한 쉽고 우리 문화에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일상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

는 내용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Saunders(2000)가 지적하였듯이 '남성의 폭력은 다른 남성에 의해 강화된다'는 점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군사정권의 영향을 30여년 동안 받고 있으며, 가부장적 군사문화가 남성들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지배적임을 감안할 때 가부장적 군사문화 역시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가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가정폭력의 실질적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철학을 정립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 역시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설계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둘째,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고 활성화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해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가해자 프로그램을 실시한 역사가 짧고 현재 프로그램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예를 들어 접근방법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검증해 보거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형태를 비교분석 해보는 것도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만 폭력적인 가해자와 전반적으로 폭력적인 가해자,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가해자 등과 같이 가해자의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 보거나 유형별로 가해자를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그 효과를 비교분석 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효과검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수행 중인 평가방식은 대부분 자기보고식의 양적 조사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치로서의 적절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효과를 지지해주는 임상적·경험적 증거가 거의 없는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적이 가해자의 폭력근절과 피해자의 안전확보임을 감안한다면, 프로그램 수행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과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 사정이나 평가를 위한 윤리적 표준안 및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행해진 두 가지의 연구(Gondolf, 1999; White & Gondolf, 2000)에서 형식 및 접근방법이 상이한 프로그램 사이의 효과나 가해자 유형에 따라 변형을 준 프로그램간의 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 프로그램 내용, 가해자 및 진행자와 관련된 변인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해자의 가족원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까지도 포함하여 좀 더 면밀히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추후검사와 장기적인 종단연구 역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진행자의 자격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성공여부에는 프로그램 자체의 철학과 내용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진행주체가 누구인지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한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진행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가해자 프로그램 진행자에게는 전문학위나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관련 현장에서의 경험과 훈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프로그램 규정에 진행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요건의 경우 폭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하고, 알콜 혹은 약물남용의 경험이 없어야 하며, 성차별적인 태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자격요건의 경우 대인관계기술, 집단 역동성,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한 쟁점 등에 대한 경험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 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윤리적 규정마련과 더불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정, 개입 방법, 가정폭력 관련 연구, 교육 방법, 상담 기술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과정 이수, 현장실습,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슈퍼비전 등 체계화된 자격규정과 연수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해자 개개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사회적 서비스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 후 폭력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폭력근절의 의지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폭력은 재발할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개개인에게서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즉 저학력인 경우에는 재교육의 기회를,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취업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연계하는 것 또한 폭력재발 방지를 위한 방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일원화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해여성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협조, 경찰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개입, 보호관찰소 및 법원 등 사법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지역 사회의 알콜 치료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정신 건강 서비스 자원과의 연계,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가해자 프로그램은 단지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가정의 기능회복과 화합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공미혜(1997).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 아내구타: 부산여성의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제9집, 49-79.
- 2) 광주여성의전화(1999).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3) 김현수·조선미·윤웅장·이영미·송은하(2000). 한국 가정폭력 남성 가해자의 유형화에 관한 예비적 연구.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35-50.
- 4) 박미은(1998). 가해자치료프로그램. *광주여성의전화 상담원 워크샵자료집*.
- 5) 법무부(1999). 1999년도 수강명령 우수 집행 사례집.
- 6)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부산여성의전화(1999).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아내구타자를 중심으로-
- 7)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1999).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8) 열린가족복지연구소(2000). 1999년 가정폭력 행위자 심리교육 집단 보고서.
- 9) Adams, D.(1988). Treatment Models of Men Who Batter: A Profeminist Analysis, In Kersti Yllo & Michele Bograd(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10) Austin, J., & Dankwort, J.(1999). Standards for Batterer Programs: A Reivew and Analysi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4(2), 152-168.
- 11) Beauchamp, T., & Childress, J.(1990).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2) Bennett, L.(1999). Standards for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In Whose Interest?. *Violence Against Women*, Vol. 5(1), 6-24.
- 13) Bograd, M(1984). Family Systems Approaches to Wife Battering: A Feminist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31, 129-137.
- 14) _____(1988).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An Introduction, In K. Yllo & M. Bograd(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15) Dobash, R. E., & Dobash, R. P.(1992). *Women, Violence, and Social Change*. New York: Routledge.
- 16) Eisikovits, Z. C., & Edleson, J. L.(1989). Intervening with Men Who Batter: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Vol. 37, 385-414.
- 17) Gelles, R. & Maynard, P.(1987). A Structural Family Systems Approach to Intervention in Cases of Family Violence. *Family Relations*, Vol. 36, 270-275.
- 18) Gelles, R.(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19) Gondolf, E.(1991). *A Victim-Based Assessment of*

- Court-Mandated Counseling for Batterers. *Criminal Justice Review*, Vol. 16, 214-226.
- 20) _____ (1997a). Batterer Programs: What We Know and Need to Know.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2(1), 83-98.
- 21) _____ (1997b). Expanding Batterer Program Evaluation. In G. K. Kantor & J. Jasinski(Eds.), *Out of darkness: Contemporary Research Perspectives on Family Violenc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22) _____ (1999). A Comparison Of Four Batterer Intervention Systems: Do Court Referral, Program Length, and Services m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4(1), 41-61.
- 23) Gondolf, E., & Russell, D.(1986). The Case Against Anger Control Treatment Programs for Batterers. *Response*, Vol 9(3).
- 24) Higgins, John G.(1978). Social Service for Abused Wives. *Social Casew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May 269-270.
- 25) Kaufman, G.(1992).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of Battered Women in Family Therapists' Offices: Male Privilege Colluding with Male Violence.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Vol. 18, 233-243.
- 26) Rosenfeld, B.(1992). Court-ordered Treatment of Spouse Abus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12, 205-226.
- 27) Saunders, Daniel. D.(2000). Programs for Men Who Batter: A Summary of Models & Recent Research.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예방과 개입에 관한 국제 워크샵 자료집*, 5-12.
- 28) Stordeur, R., & Stille, R.(1989). Ending Men's Violence against Their Partners: One Road to Peac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29) Taylor, John W.(1984). Structured Conjoint Therapy for Spouse Abuse Case.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Jan.
- 30) Tolman, R., & Bennett, L.(1990).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5(1), 87-118.
- 31) White, Robert J., & Gondolf, Edward W.(2000). Implications of Personality Profiles for Batterer Treat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5(5), 467-468.
- 32) Wolf, C.(1983). Social Impact Assessment: A Methodological Overview. In K. Finsterbusch(Ed.), *Social Impact Method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